

학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 19 장 학·석사연계과정(학칙 제34조의2)

제108조(정의)

- ① 학사과정 4학기를 이수하고 7학기까지 학사과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는 학사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 ② 학·석사연계과정은 학사학위과정과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학사학위과정을 3.5년(7학기), 석사학위과정을 1.5년(3학기)에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제109조(지원자격 및 신청)

- ① 학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로 이수하고 해당 학기 수료인정 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65학점 이상 4학기 수료
 2. 82학점 이상 5학기 수료
 3. 98학점 이상 6학기 수료
- ② 신청 직전 학기까지 전체 성적 평점 평균이 3.5이상인 자
- ③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아 일반대학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형에 통과하여야 한다.

제110조(교과목의 이수)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학부 재학 중 석사학위과정 연계교과목(학기당 3학점 이내)중 6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이수한 교과목은 학부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제111조(등록)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7학기까지 학부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8학기 이후에는 대학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2조(졸업요건)

- 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7학기까지 학사과정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평점평균 3.75 이상 취득한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 ②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학생이 중도 포기하고자 하거나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포기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석사연계과정을 포기한 학생은 학·석사연계과정 이수생에서 제외하고 학사학위과정 8학기에 등록하여야 한다.